

한국수어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허일(한국복지대)

한국수화언어법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년 2월 3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 8월 4일 시행되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은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해서 수립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해 정말 한국수어 발전하고 농인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도록 농인과 청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변화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어떤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시행되었고, 2017년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8년부터 실천되고 있음에도 한국 농인의 삶과 한국 수어가 처한 현실에 왜 이리 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을 통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이어야 한다.

이 법은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를 국어(Korean language)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며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2조)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Deaf culture)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3조).

이 법은 분명히 한국수어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국어(Korean)나 영어(English), 유사한 국어체계(수지 한국어, 한국어대응수화, 한국어식 수화, 청인식 수화 등)¹⁾을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발전시키고 보전하고자 하는 언어는 한국어나 유사한국어체계(수지 한국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인들(일부 수화통역사들)은 유사한국어체계(수지 한국어)를 ‘한국수어’나 ‘한국수화’, ‘수어’, ‘수화’라는 명칭으로 배워 왔다.

언어학적으로 KSL(Korean Sign Language)과 SK(Signed Korean)는 크게 다르다. KSL은 한국수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SK(Signed Korean)는 수지 한국어, 한국어대응수화, 한글식 수화, 아식수화, 문법식수화, 문장식수화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SK(Signed

1) 유사한국어체계를 유사수화체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한글점자처럼 한국어 손 버전에 해당되는 수지 한국어나 한국어대응수화는 한국어에 기반을 둔 언어 체계로서 한국수어(한국수화)와 유사한 체계가 아니라 한국어와 유사한 체계이다. 따라서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를 유사수화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Korean)를 배우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농인이든 청인이든)은 한국수어(KSL)를 배웠거나 어쨌든 수어 혹은 수화(sign language)를 배우고 사용한다는 착각이 만연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어순과 문법에 맞추어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이 배우거나 알고 있는 몇 백개에서 1-2 천개의 수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에 대응시켜 대체하면서 나열한다. 즉, 수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한다.

또한 SK 사용자들은 수어 배우기와 수어통역 배우기가 동일한 과정이며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수어 단어 1500-2000개만 배우면 수화통역사 자격증 따는 것도, 농인과 대화하고, 농인을 위한 통역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믿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수어 무용론이 퍼지고, 수어를 배운 농인들은 바보가 되고 취업도 어렵고,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신념이 서서히, 어느 지역은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한국어에 비해 수어 단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 수화로는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등 수어의 한계, 무용론이 퍼지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어(수화)가 이해할 수 없고, 불완전한 한국어 문장이고, 심지어 한국수화 입장에서는 비문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사한국어체계(수지 한국어, Signed Korean)는 수어가 아니며, 수어가 들어간 명칭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²⁾. 한국어의 음성언어, 문자언어, 점자 형태 등이 있듯이 한국어의 손 표현법(Signed Korean이라는 용어는 한국어인데 Signed 형태를 취한 한국어라는 뜻)이 존재하고 이를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좀 어색하지만 문자 언어 형태의 한국어를 한글이라고 하듯이, 또한 한글 점자(한국어 점자 버전)처럼 '수지 한국어'나 '유사한국어체계'라는 표현을 씌우면서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기에 배우는 과정에서 머리에 쥐가 안 나고, 너무나 편하게 단기간 내에 '수어 혹은 수화'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의 한계와 무능, 이를 배운 사람들의 착각 때문에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가 죽어서는 안 된다. 농인들이 죽기 때문이다.

이 법이 유사한국어체계 또는 수지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수어와 유사한국어체계(수지 한국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수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어식 수화, 한국어대응수화, 아식 수화, 문장식수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어쨌든 수화 혹은 수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심지어 한국수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하고 포장하는 우를, 농인에게 피해를 주는 우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수지 한국어'가 한국수화나 한국수어라는 상품명으로 포장되고 팔리는 현실은 중지되어야 한다.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와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가 단어의 차이일 뿐이고(고급반에서 배우는 농식 수화 단어나 관용 수화 단어만 더 알면 한국수어 마스터 가능) 한국수어 단어의 의미와 형식, 실제 사용을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해도 무방하며, 한국수어 문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어 문법과 동일하고 한국어 어순에 따라 한국수어 단어를 나열하면 그게 수화고 한국수어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제 자신이 '수지 한국어'를 배우고 알고 있으며 사용하고 '수지 한국어(유사한국어체계)'로 통역하고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즉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통역하고 있음을.

2) 한국 현실에서는 '수화' 명칭이 포함된 한국어대응수화, 한국어식 수화, 아식수화, 문장식수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 지고 있으나, 유사한국어체계나 수지 한국어, 손 한국어, 수지부호 한국어 등 언어학적으로는 수어가 아니라 한국어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지 한국어’를 배워 수화한다고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언어로서의 한국수어나 수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그것도 Key Word Signing 방식의 불완전한 한국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수지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표현된 생각이나 대화, 책 내용, 강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신념을 퍼트리고 다니는 SK 사용자들을 설득하고 그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가 한국수어(수화)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고, 연구물로 나오는 것도 막고,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 혹은 ‘손짓 한국어’(수화를 손짓언어, 수화노래를 손가락 춤이라고도 많이 하니)의 한계와 무능(한국어 문장에 담긴 의미 및 문법 정보와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 문장에 담긴 정보의 불일치 및 표현불능)을 한국수어에 덤탱이 씌우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수어에는 한국어처럼 격조사가 없어 주어를 어순 외에는 표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에서는 그렇지만, 한국수어에는 격 표현 문법 장치가 있어서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즉 격조사가 아니라 NMS를 통해 격을 표현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도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와 한국수어로 나누어 자격인정 시험을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에서는 이미 수화통역2(문장수화통역, 화면에 제시되는 문장식수화를 숙지한 후 제시된 질문에 답하는 통역)와 수화통역1(농수화통역, 화면에 제시되는 농식 수화를 숙지한 후 제시된 질문에 답하는 통역)라는 시험과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통역사 자격증도 미국이나 청각장애인 통역사 시험처럼 ‘유사한국어체계(수지 한국어)’ 음역사(한국어-수지 한국어) 자격증과 ‘한국수어’ 통역사(한국어-한국수어) 자격증으로 구분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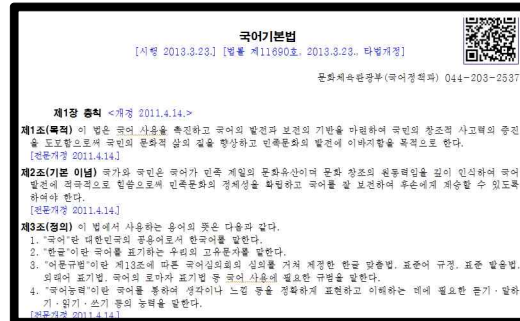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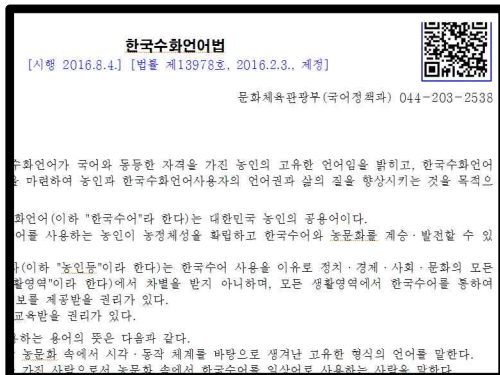
2. 한국수어 사용자(농인과 청인 포함)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되며, 한국수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수화언어법(2조)에서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초로 한국수화언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국수어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모든 법령에 대해 음성 출력 및 점자 출력이 가능한 QR코드를 오른쪽 위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법령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출력용 QR코드를 삽입하듯이 한국수어 사용 농인을 위한 수어 법령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및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홈페이지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수어로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① 도서관 웹 콘텐츠 인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웹 콘텐츠는 청각장애인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웹 콘텐츠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1 텍스트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 ①-2 텍스트와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 a)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그림,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스키(ASCII) 그림문자, 기호(Bullet) 이미지, 그래픽 버튼, 이모티콘(Emoticon), 릿스피크(Leetspeak) 등과 같이 표준 문자(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글 부호의 경우, 유니코드, 조합형 또는 완성형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b) 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 한글 텍스트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텍스트를 의미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 혹은 핵심 내용을 수화로 번역하여 동영상 등 대체 미디어, 수화문자, 수화 아바타, QR코드, 수화 아이콘을 통하여 수화 텍스트를 제공한다.
- c) 대체 미디어(Alternative media): 텍스트 콘텐츠를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 콘텐츠를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은 대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 d)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 확대 프로그램, 특수 키보드 등을 들 수 있다. 보조 기술은 보조 공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e)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해당 이미지와 동등하게 인식할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지양하여야 하나,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대체 텍스트 및 대체 미디어를 텍스트와 함께 병행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 f) 대체 미디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내용을 수화로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의 경우, 해당 비디오 파일에 대한 별도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텍스트 콘텐츠의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 g)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를 제공하는 경우: 텍스트 전체를 동영상 등 대체 미디어나, 수화문자, 수화 아바타, QR코드, 수화 아이콘을 통하여 수화 텍스트를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요점 혹은 핵심 내용만을 대체 텍스트 혹은 대체 미디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3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①-4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a)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또 다른 포맷과 동기화하여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혹은 콘텐츠 생성 과정의 특정 시점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또는 대화가 필요한 매체를 말한다.
- b) 자막(Captions): 영상매체에 포함된 말, 음향 및 주변소리 등을 텍스트로 표현한 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막은 영상매체의 진행에 따라 해당 이벤트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자막은 크게 닫힌 자막(Closed caption)과 열린 자막(Open caption)이 범용적으로 활용된

다. 닫힌 자막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있는 데 반해, 열린 자막은 비디오 콘텐츠에 자막정보가 함께 녹화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없다.

- c) 대체 수단: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 수단으로는 자막, 구술된 내용을 글로 옮긴 원고(Transcript), 수화(Sign language) 등이 있다.
- d)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닫힌 자막(Closed caption)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Synchronized)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Video)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오, 원고)을 제공하고,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e) 자막(Caption)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으로 자막이 제공되거나 전용 재생 장치(Player), 별도의 자막 재생 장치 또는 현존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자막을 인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자막으로 인해 중요한 음향효과나 음성이 끊기게 되면 이 검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된다.
- f) 원고(Transcript)를 제공하는 콘텐츠: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원고 또는 대본(Scenario)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g)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5 도서관 웹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①-6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①-7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a)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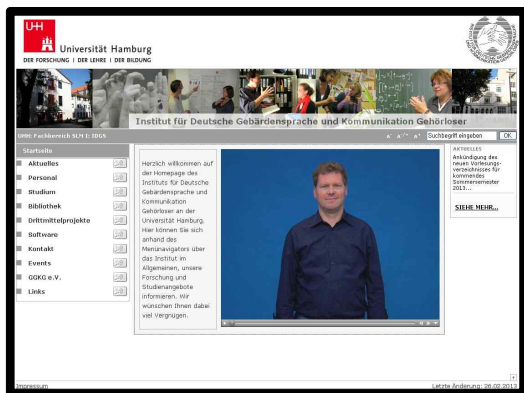
b) 웹 페이지의 언어 명시: 웹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콘텐츠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보조 기술로 전달한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언어 정보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전달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도록 제어하기도 한다. 따라서 웹 페이지의 기본 언어는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② 농인 자신이 선택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장애인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의견의 자유와 정보접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장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형태·형식들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N 장애인권리협약 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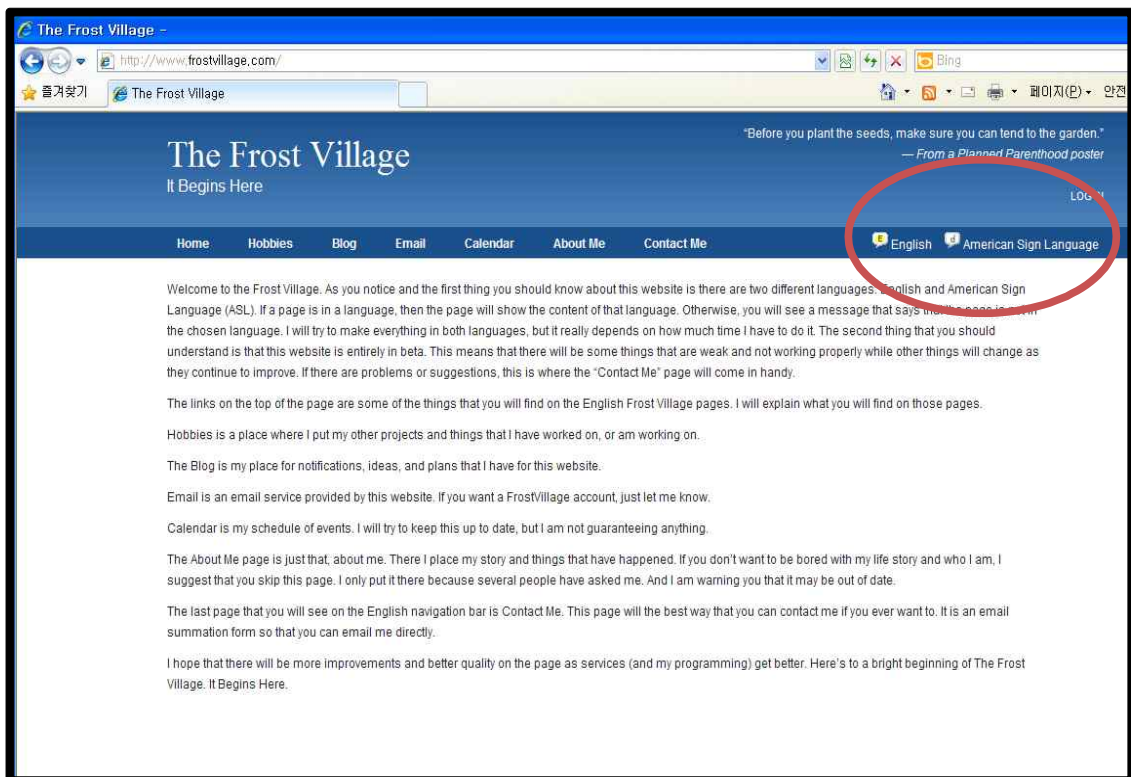
[그림 1] 수화 동영상이 탑재된 홈페이지 예
<http://vl2.gallaude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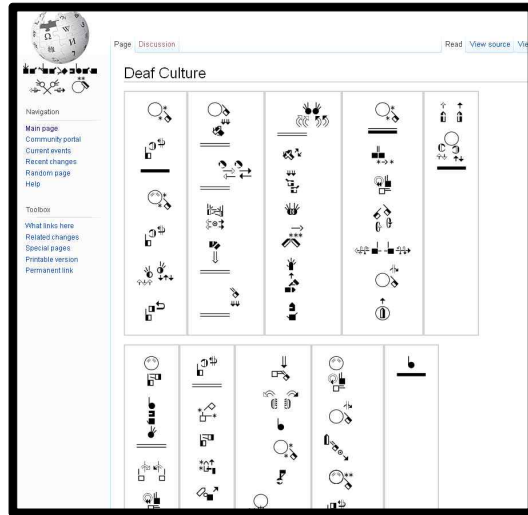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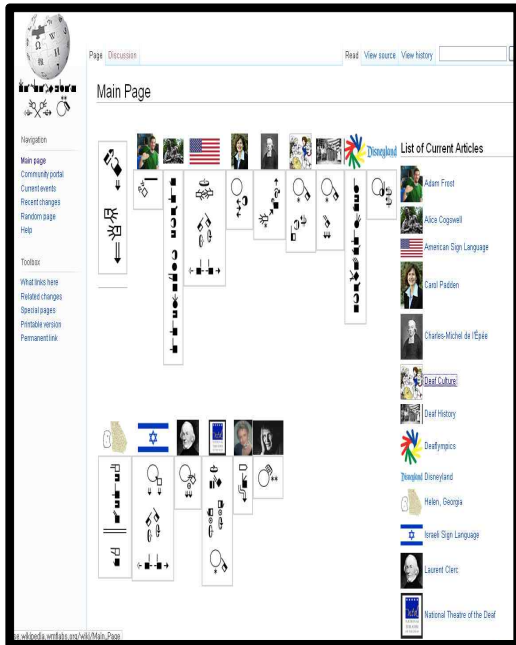


[그림 2] 수화아이콘과 동영상이 탑재된 홈페이지 예
<http://www.sign-lang.uni-hamburg.de/#>



[그림 3] 수화문자가 병기된 홈페이지 예
www.signwriting.org





[그림 4] 수화문자로 제작한 홈페이지 예

<http://www.frostvillage.com/>

http://ase.wikipedia.wmflabs.org/wiki/Main_Page

3. 농인이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농인 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1조).

현재 농학교에서는 체계적인 한국수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국어 교과는 있으나, 한국수어 교과는 없다), 일반학교와 동일한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내용체계에서 언어 관련 과목인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원성옥 발제, 2016.4.8. 한국수어정책토론회).

교육과정에서 수어와 관련된 언급은 국어와 영어 교과안에서의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어의 '듣기'는 '듣기·수어 읽기·말 읽기'로 '말하기'는 '말·수어하기'로 수정하고 국어 교과 내에서 수어를 함께 지도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영어과 안에서 국어를 함께 지도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므로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어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도 없는 교육과정의 형태이다.

따라서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학교 교육과정 안에 정식교과로 한국수어 교과를 설치·개설하고 한국수어 교육(되도록 원어민 교사, 농인 한국수어교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학생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정과 한국수어(교과) 교과서, 기존 한국어 교과서(수어 버전, Two-Way Book)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국어 중>

- ㉑ 듣기(말·수어 읽기)를 위해 상대방의 말에 청각과 시각을 집중하여 듣는 습관을 기르고 자음과 모음의 구형과 지문자·수어의 구도를 익히도록 지도한다. (청각장애)
- ㉒ 말하기(말·수어하기)를 위해 보장구를 활용하여 구화 지도를 하고, 이와 함께 지문자를 바르게 사용하며 손의 형태·동작·위치를 바르게 하여 수어를 하도록 지도한다. (청각장애)

아울러 농학교 교사들의 한국수어 능력(유사한국어체계나 수지 한국어가 아니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어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의 교육용 수화지도 역량 강화 과정에서도 한국수어의 문법과 한국수어의 단어 사용법, 문장 구성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각종 교과 관련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단어를 가르치고 표현해 보도록 하는 교육(기존 수지 한국어 교수 방법, 한국수어 단어만을 가르치고 한국수어 문법이나 단어를 나열·조합하여 수어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농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 문법과 한국어 단어 사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아, 농학교 교사들의 한국수어 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불행히도 여전히 단어 중심 교육,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하고, 한국어 기반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표현 훈련 중심을 교육을 받게 되면 한국수어 문장이 아니라 수지 한국어 문장, 즉 한국어 문장을 그것도 불완전한 한국어 문장(조사와 어미가 없고 모든 단어를 기본형으로 표현)을 표현하는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교과 관련 한국어 단어에 해당하는 한국수어 단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등, 역시 수어로는 농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직무연수 제18기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지도 역량 강화 과정

1) 주 제

-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지도 역량 강화

2) 목 표

-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의 교육용 수화언어 능력 신장
-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의 교과 및 상담 지도 시 수화활용 능력 신장

3) 연수대상 및 기간

기 번	대 상	인 원	기 간	장 소
18	• 청각장애학교 특수교사	30명	7.25(월)~8.9(화) (12일, 75시간)	제3강의실

※ 이 연수는 수화능력 평가 인증을 위한 과정으로 원격 15시간, 집합 75시간의 혼합연수로 추진되므로 집합연수 전 우리원 원격연수 15시간 이수 필수(우리원 '수화기초과정' 원격연수 이수 기간 : 2016. 7. 4. - 7. 15. 참고)

4) 교과목

영역	교 과 목	시수(75)	교 육 내 용
기본 소양	1) 융합의 시대,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2	•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대한 이해 •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전문	<수화 기초 단계>		
	소 계	15	
	1) 수화 기초 이론 I	4	• 수화언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수화언어의 교육적 가치 • 수화언어의 표현상의 특징 • 유창한 수화언어의 이해 (속도/리듬/정확성/섬/강세 등)
	2) 수화 기초 이론 II	3	• 농문화와 농정체성의 이해 • 농 사회의 특성
	3) 수화 기초 실기 I(국어·수학)	2	• 국어 교과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 수학 교과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4) 수화 기초 실기 II(사회·과학)	2	• 사회 교과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 과학 교과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5) 수화 기초 실기 III(고민 상담)	2	• 고민 상담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 상담의 자세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6) 수화 기초 실기 IV(보건·건강)	2	• 보건, 건강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 성교육 관련 수화 단어와 표현	

영역	교과목	시수(75)	교육내용
전문	<수화 심화 단계>		
	소 계	56	
	1) 수화 심화 이론 I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수화언어의 언어학적 특징 수화언어의 교육적 가치
	2) 수화 심화 이론 II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화언어의 단어 사용과 단어 형성 수화언어 문법 및 수업언어로써의 수화언어 농문화와 농 공동체의 이해
	3) 수화 심화 이론 III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화언어 유창성의 이해 수화언어 평가의 이해
	4) 수화 심화 실기 I(학교 관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관련 수화 연습 1 학교 관련 수화 연습 2
	5) 수화 심화 실기 II(상담 관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관련 수화 연습 1 상담 관련 수화 연습 2
	6) 수화 심화 실기 III(관용 표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화언어 관용 표현 연습 1 수화언어 관용 표현 연습 2
	7) 수화 심화 실기 IV(오류 분석)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수화 표현 오류 분석 1 교사 수화 표현 오류 분석 2
	8) 수화 심화 실기 V(학생 수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수화 표현 이해 연습 1 학생 수화 표현 이해 연습 2
	9) 국어교과 수화 이론 및 실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교과 관련 수화 단어 국어 교과 관련 교수·학습 지도
	10) 수학교과 수화 이론 및 실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 교과 관련 수화 단어 수학 교과 관련 교수·학습 지도
	11) 사회교과 수화 이론 및 실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교과 관련 수화 단어 사회 교과 관련 교수·학습 지도
	12) 과학교과 수화 이론 및 실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교과 관련 수화 단어 과학 교과 관련 교수·학습 지도
	13) 영어교과 수화 이론 및 실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교과 관련 수화 단어 영어 교과 관련 교수·학습 지도
	14) 예·체능교과 수화 이론 및 실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체능 교과 관련 수화 단어 예체능 교과 관련 교수·학습 지도
	15) 수화언어 발표와 토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화언어 발표 연습 및 상호 토론 - 소모임별 활동(1인 15분씩 발표해 보기)
16)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화 지도 능력 신장 방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임토의 및 발표 	
행정 평가	소 계	2	
	1) 개강식 및 과정 안내	0.5	-
	2) 학습활동 평가	1	-
	3) 연수운영 평가 및 수료식	0.5	-

4. 한국수화언어법의 사문화를 막아야 한다.

이 법에는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나, 법적 미비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어렵게 통과되고 제정되고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 5 년마다 수립·시행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실태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어의 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한국수어의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국수어의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어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

	<p>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한국수어의 날	<p>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p>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이러한 법적 미비는 국어(한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어기본법’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 조사 등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국어책임관의 지정	<p>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어문규범의 제정 등	<p>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공문서의 작성	<p>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p>	○

	<p>쓸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국어심의회	<p>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외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국어문화의 확산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국어 정보화의 촉진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p>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p> <p>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7. 3. 21.></p> <p>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p>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
국어의	<p>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p>	○

보급 등	<p>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세종학당 재단 설립 등	<p>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⑨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p> <p>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
한글날	<p>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 이후, 2018년 10월 현재 한국수어의 날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기념식도 치러지지 않는 이유를 ‘국어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떤 법령이 담당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을 넘어서 타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거나 타부의 참여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동급의 장관들 사이에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은 일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수화언어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등 다른 부의 협력과 실행이 필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없고,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공무원들은 일을 할 근거가 없으므로(타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한국수어의 정보화, 한국수어의 교육, 수어통역, 한국수어의 날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다(공무원들은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루 빨리 한국수화언어법이 실행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한 줄 문구만 들어가면 된다. 한국수화언어법에는 꽤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 많다.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내용도 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실행하지 않을 거라면 온갖 좋은 말, 이상적인 문구들이 다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5.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의 적용 범위와 추진 과제를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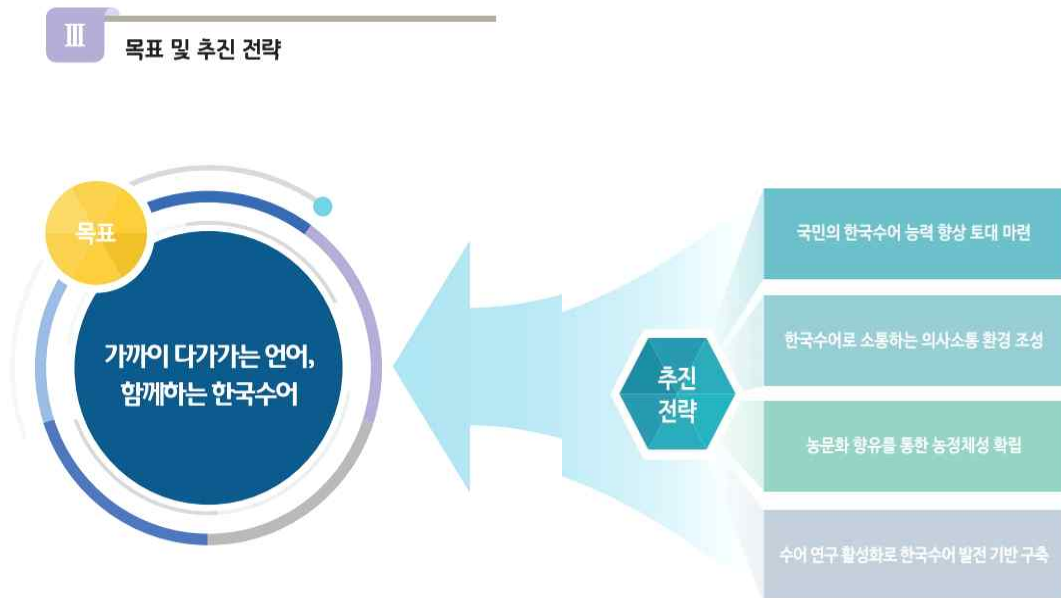
정말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제1조),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고,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농인 등이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제2조) 한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권한을 갖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니고 산하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할 수 있는 추진 과제만을 나열하고, 일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법적 미비(시행령 없음)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 아니 국립국어원이 할 수 있는 추진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에서처럼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2021)과 비교해 보면 각 계획의 적용 범위와 추진 과제의 수준을 분명하게 가늠해 볼 수 있다.

①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IV

3대 중점 추진 과제



V

5대 추진 과제



◎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 기반 마련 및 시행 연차별 계획

연 차	추진 계획
1년차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육능력에 관한 기초 연구 및 검정 방안 마련
2년차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범 운영(모의시험)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기관 선정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제1회) • 한국수어능력 관련 학술대회 개최 • 한국수어능력에 관한 기초 연구 및 검정 방안 마련
3년차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제2회)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시범 운영(모의시험)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 기관 선정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제1회)
4년차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제3회)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제2회)
5년차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제4회)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제3회)

◎ 한국수어사전 정비 및 구축 연차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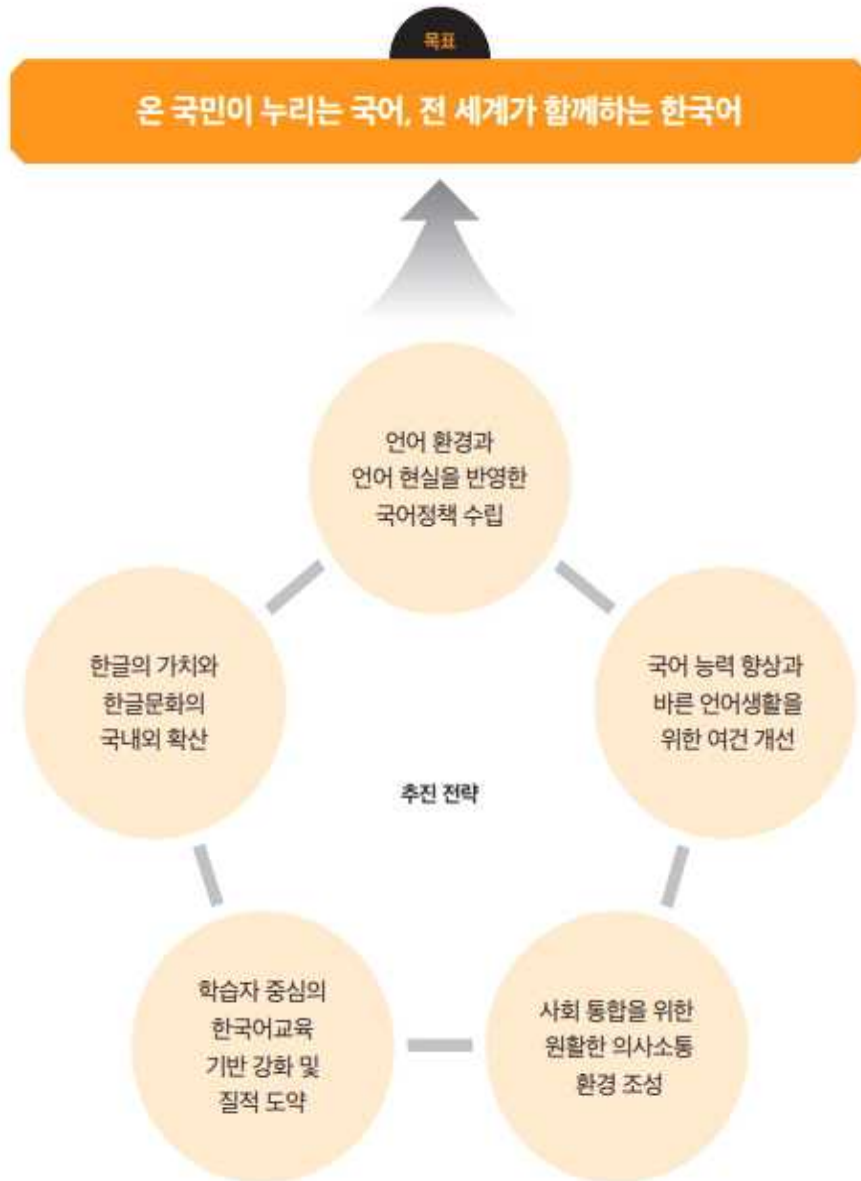
연 차	추진 계획
1년차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사전> 개선 및 정비 • ‘한국수어-한국어’ 이중 언어 사전 설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설계
2년차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사전> 개선 및 정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의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시범 구축1

연 차	추진 계획
3년차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사전> 개선 및 정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의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국수어 표제어 추출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시범 구축2
4년차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사전> 개선 및 정비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의 자료 수집 및 분석 • 한국수어 표제어 추출 • 한국수어 뜻풀이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보완1
5년차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사전> 개선 및 정비 • 한국수어 뜻풀이 구축 • 한국수어 용례 구축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시스템 보완2

◎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연차별 계획

연 차	추진 계획
1년차 (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자료의 수집 • 한국수어 주석 말뭉치 보완 및 전사 지침 보완
2년차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자료의 수집 • 한국수어 주석 말뭉치 보완 및 전사 지침 보완 • 한국수어 말뭉치 분석
3년차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자료의 수집 • 한국수어 말뭉치 분석 • 한국수어 말뭉치 시스템 고도화
4년차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자료의 수집 • 한국수어 말뭉치 분석 • 한국수어 말뭉치 시스템 고도화
5년차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자료의 수집 • 한국수어 말뭉치 분석 • 한국수어 말뭉치 시스템 고도화

②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한국수화언어법과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은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기엔 너무 역부족이고 불충분하다(Not Enough). 이는 거짓 희망(false hope)에 기반한 쉬운 해결책(easy solution)의 전형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을 오랜 기간 고생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이유와 농인들의 지난한 삶, 그들의 바램,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사회의 달성 여부에 눈 감고, 법이 하라고 한 일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인 국립국어원, 그 산하 부서인 특수언어진흥과가 할 수 있는 일들만으로 목표 달성하려는, 효과는 없고, 효율만 추구하는 일 추진의 전형이다.

한국 농인들과 한국수어 사용자들은 왜 법이 제정되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실행되기 시작했는데, 농인의 삶과 한국수어가 처한 현실은 변한게 거의 없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왜 몇몇 한국수어 연구 프로젝트와 한국수어교원 자격 도입, 한국수어 관련 검정 시험 도입 외에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3대 중점 과제나 5대 추진 과제가 완료되면,

정말, 정말, 정말,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고,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될 수 있는지

질문 던지고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려울 것 같다면

법을 개정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살려야 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 과제를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특수언어진흥과를 넘어, 국립국어원을 넘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